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9가단514011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건물 10, 11층 자치운영관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한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남누리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최민령, 서동근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2018. 6. 11. 체결된 34,1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6. 24.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A건물 제1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0(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6.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8. 8. 31. 기간만으로 종료되었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8. 5. 31. 기준으로 114,453,866원, 2018. 8. 31. 기준으로 163,953,866원의 차임 및 관리비, 그 지연손해금 등 합계 226,528,160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다. 2018. 6. 11.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계좌로 34,1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위 돈은 같은 날 피고 직원의 급여로 지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23,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이 없어 규약에 근거하여 대표자가 선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구성원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분인 구좌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법인사단이 아니고, 비법인사단이 아닌 이상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2) 갑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A건물 상가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지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산하의 업종별 관리회 중 하나인 A건물 상가 10, 11층의 공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사무소, 규약 및 회장, 부회장, 감사, 총별 이사 등의 임원을 두고, 업종별 관리회 총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 그 실체는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회원이 지분소유권 1구좌 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대료, 관리비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8. 6. 11. 피고에게 3,410만 원을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통모한 변제를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 또는 변제약정의 취소와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송금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법인격 남용)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피고는 모두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소외 회사의 본점에 피고의 상표가 함께 홍보되는 등 인적, 물적 자원이 같을 뿐 아니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자금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그 재산도 분리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있는 등 사실상 같은 법인격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격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앞서 원고에 대한 임대료 등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내지 5, 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0, 11, 14, 15,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그 법인격이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외 회사와 피고의 목적이 일부 겹치기는 하나 소외 회사는 이미용 학원 프랜차이즈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피고는 미용업 프랜차이즈(손발톱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피고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소외 회사와는 다른 곳이었으며 그 구성원인 직원들도 구성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는 원장이 작성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회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4)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송금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D의 처인 E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와 다르고 당시 E은 소외 회사의 49%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D와 경영권분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2018. 11.경부터 D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은 자신의 해임 및 후임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주주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D와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계속하다가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30175)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는바, 이 사건 송금 당시 D가 소외 회사를 1인 기업처럼 지배하며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